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39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교 신입생 및 전학오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제3조)
- 나. 지원금액(제4조)
- 다. 지원절차(제5조)
- 라. 환 수(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 나. 예산조치 : 3,930,000천원(세부내용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18. ~ 11. 7.(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불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중.고등학교)

연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지원 적합 여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비고
	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일부 지원	수혜 없음	
					적 합 부적합	금액 기재		

작성자 : ○○ 중·고등학교 ○○○ (인)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달성군수 귀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법령 유권해석(법제처-18-0364,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

[별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가. 지원시기 : 2020년부터 연중 사업 실시
- 나. 지급대상 : 관내 중·고교 신입생 및 전학생 중 군민
- 다. 지원액 : 1인당 최대 300천원 이내
- 라. 지원방법 : 학교별 교육경비 지급

2. 비용 발생 요인

- 가. 지급대상자 1인당 최대 300천원의 교복구입비 지원

3. 관련조문

- 가.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4조(지원금액)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2020년부터 사업시행 계획
 - 2) 현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학생 수 변동요인 반영
- 나. 추계 결과 : 3,930백만원
 - 1) 향후 5년간 사업비 예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행대상	중·고	無	중	중·고	중·고	중·고
지원인원	13,100	0	2,300	3,600	3,600	3,600
지원예산	3,930	0	690	1,080	1,080	1,080

-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정책관광국 정책사업과 김성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0	690,000	1,080,000	1,080,000	1,080,000	3,930,000
교복구입비 지원		0	690,000	1,080,000	1,080,000	1,080,000	3,9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0	690,000	1,080,000	1,080,000	1,080,000	3,930,0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